

【사건번호 2022-055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대상 공공데이터: 발간물 데이터
- 신청목적: 출판, 전자책 제작

2. 신청취지

-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, 영리적 이용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.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 보유·관리 현황

- 신청 데이터는 2012년부터 당해 연도 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, 신청 데이터도 2022년도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신규 삽화 추가 또는 기존 삽화 수정, 내지 재편집 등을 통해 제작된 데이터임
-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, 해당 웹페이지에서는 “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4유형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”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
- 또한, 신청 데이터 PDF 파일에도 “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.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우리 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”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를 의미함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(정부의 책무) 및 한국

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(사업)에 따른 업무* 수행을 통해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로서,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**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

* 산업안전보건법 제4호제1항2호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, 5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등 안전 문화 확산 추진

** pdf 등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·제공하고 있음

다.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.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로서 비공개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 대상으로 볼 수 있음
-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(저작자)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나(제10조, 37쪽)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(제45조), 저작물 작성 및 권리 귀속, 이전, 이용허락 등에 관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, 표지(앞) 디자인 및 변경, 삽화 신규 제작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피신청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가 창작에 참여하였고, 피신청인이 제3자가 제작한 모든 표지, 삽화 중 일부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양도받았으나 그 외의 제3자 창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양도받거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함을 확인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'공공데이터법'이라 한다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).
 - 다만,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 호).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공공누리 제4유형(출처표시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금지)의 조건으로 공공데이터포털과 피신청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,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요청하는 취지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해 거부 결정하였는바,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 - 피신청인 제출자료, 담당자 진술 및 위원회 사실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, 이 사건 데이터에는 1,300여 종의 삽화 등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 저작권을 양도받았음이 확인되나, 나머지 삽화의 경우 저작권 양도 사실이 없거나 권리 처리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.
 - 또한, 이 사건 데이터가 2012년 최초 작성되어 10여 년간 개정되면서 여러 삽화들이 추가, 변경되어 왔으며, 이 중 과거 작성된 일부 삽화의 경우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,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기는 어려우며,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함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.

5. 조정결과

-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이 불수락하여 조정불성립